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9를 제28조의10으로 하고, 제2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9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) 법 제43조의11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”이란 12억원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28조의9(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) 법 제43조의11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”이란 12억원을 말한다.</u>
<u>제28조의9 (생략)</u>	<u>제28조의10 (현행 제28조의9와 같음)</u>